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4. 10. 2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24년 9월 13일
- 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다. 회부일자: 2024년 9월 23일
- 라. 상정일자: 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9. 30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보건소장 최윤정)

가. 제안이유

-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및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 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항목 정비 및 문장 정비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가. 건강진단결과서 진단 항목 및 수수료 정비(안 별표)
- 나. 수수료 및 진료비 납부 방법 변경(안 제5조)
- 다. 상위법과 일치 및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정비(안 제1조, 안 제2조제1항, 안 제3조제1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고,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을 참고하여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에서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의미가 모호한 “진료수가”를 삭제함.
- 안 별표에서는 관계법령인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및 「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」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함.

○ 검토 결과

- 「지역보건법」 제25조에 근거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함에 따라 우리 구(區)는 본 조례를 제정('88.5.1. 제정)하여 시행 중임.
- 이번 일부개정은 관계법령인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및 「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」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5조는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'24.11.23. 시행될 예정이며, 우리 구에서는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. 또한, 현행 규칙에 따른 수수료는 3,000원으로 이번 일부개정 이후에 금액이 바뀌는 사항이 아니기에 상위법 시행 전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.

- 아울러, 「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」 제6조는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는 사람에게 동일한 서식의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도록 개정되어 해당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.

4. 심사결과: 수정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| |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399 | 관련 번호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-|

제안연월일: 2024. 9. 30.

제안자: 박현우 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- 조례에 수수료 납부방식을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명시하는 것은 다른 결제 방법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에 다양한 결제 수단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함.

2. 수정내용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5조 중 “그 날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”를 “그 날 납부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 중 “그 날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”를 “그 날 납부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 수정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제5조(납부방법)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. | 제5조(납부방법) ----- ----- 그 날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. | 제5조(납부방법) ----- -----그날 납부하여야 한다. |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진료 시의 의료수가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기준에 따른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“20년이상”을 “20년 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9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- ①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.

안 제5조 중 “그 날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”를 “그 날 납부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수수료 및 진료비 (제2조제2항 관련)

| 구 분 | 종 목 | 단 위 | 금 액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|
| 1.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, 제증명 | 가. 근로자 건강진단서 | 1통 | 500원 | |
| | 나.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| 1통 | 500원 | |
| | 다. 일반진단서 | 1통 | 500원 | |
| | 라. 특별진단서 | 1통 | 2,000원 | 요양신청용, 병사용, 상해진단용 |
| | 마. 사체검안서 | 1통 | 5,000원 | |
| | 바. 성별 및 연령감정서 | 1통 | 2,000원 | |
| | 사. 건강진단결과서 | 1통 | 3,000원 | 진단항목은 「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」 및 「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」에 따른다. |
| | 아. 건강진단서 | 1통 | 3,000원 |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 '사'목에 '타'목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. |
| | 자. 사망진단서 | 1통 | 500원 | |
| | 차. 출생,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| 1통 | 500원 | |
| | 카. 결핵진단서 | 1통 | 300원 | |
| | 타. 그 밖에 사실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 | 1통 | 300원 | |
| | 파. 기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 | 1통 | 300원 | |
| | 하. 1통 초과 발급 | 1통 | 100원 | |
| | 가. X-선 의료영상 사본 발급 | 1매 (CD) | 3,000원 | |
| 너. 외국인 결핵확인서 | 1통 | 1,500원 | | |
| 2. 유료접종 | 가. B형 간염 접종 | | | |
| | 1) 성인 | 1ml | 4,000원 | |
| | 2) 소아 | 0.5ml | 2,000원 | |
| | 나. 장티푸스 | 0.5ml | 5,000원 | |
| 다. 신증후군출혈열 | 0.5ml | 9,000원 | | |
| 3. 검사 | 가. 간염검사 | | | |

| 구 분 | 종 목 | 단 위 | 금 액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|---|
| | 1) A형 간염검사 | 1회 | 16,000원 | |
| | 2) B형 간염검사 | 1회 | 6,000원 | |
| | 3) C형 간염검사 | 1회 | 3,000원 | |
| | 나. 수질검사 | 1회 |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. | 인·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. |
| | 다. 암표지자검사 | | | |
| | 1) AFP | 1회 | 7,000원 | |
| | 2) CEA | 1회 | 7,000원 | |
| | 3) PSA | 1회 | 7,000원 | |
| | 4) CA125 | 1회 | 7,000원 | |
| | 라. 갑상선기능검사 | 1회 | 15,000원 | |
| | 마. 원스톱 건강검진 | 1회 | 9,000원 | 단, 65세 이상인 자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는 수수료의 50%를 감면한다. |
| | 바. 콜밀도 검사 | 1회 | 8,000원 | |
| 4. 구강 보건실 진료 비 | 불소도포 진료비 | 1회 | 해당연도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에 의한 치과 1회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 | 단, 시술 상. 하악 당 1회로 산정한다. |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<u>자에게</u> 「지역보건법」 제2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사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|
| <p>제2조(수수료 및 진료비) ①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.</p> | <p>제2조(수수료 및 진료비) ①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기준에 따른다.</p> |
| <p>②·③ (생략)</p> |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3조(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) ①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의 별표 중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.</p> | <p>제3조(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) ①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.</p> |
| 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| <p>②----- ----- -----</p> |
| <p>1. ~ 7. (생략)</p> |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8.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,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,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, 고엽제</p> | <p>8. ----- ----- -----</p> |

| | |
|---|---|
| <p>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 증 2세환자, 참전유공자, <u>20년</u> <u>이상</u> 장기복무제대군인, 특수 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</p> <p>9. <u>기타</u>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</p> <p>10. (생략)</p> <p>제5조(납부방법) 수수료 및 진료 비는 <u>선납으로 한다.</u></p> | <p>----- ----- <u>20년</u> <u>이상</u> ----- -----</p> <p>9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 <p>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납부방법) ----- --- <u>그 날 납부하여야 한다.</u></p> |
|---|---|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399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: 2024. 9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및 「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」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진단(결과)서 항목을 정비하고 맞춤법 등 문장 수정을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건강진단결과서 진단 항목 및 수수료 정비(안 별표)
- 나. 수수료 및 진료비 납부 방법 변경(안 제5조)
- 다. 상위법과 일치 및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정비
(안 제1조, 안 제2조제1항, 안 제3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, 「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4. 8. 1.~8. 22. / 21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진료 시의 의료수가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기준에 따른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“20년이상”을 “20년 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9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- ①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.

제5조 중 “선납으로 한다”를 “그 날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수수료 및 진료비(제2조제2항 관련)

| 구 분 | 종 목 | 단 위 | 금 액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|
| 1.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, 제증명 | 가. 근로자 건강진단서 | 1통 | 500원 | |
| | 나.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| 1통 | 500원 | |
| | 다. 일반진단서 | 1통 | 500원 | |
| | 라. 특별진단서 | 1통 | 2,000원 | 요양신청용, 병사용, 상해진단용 |
| | 마. 사체검안서 | 1통 | 5,000원 | |
| | 바. 성별 및 연령감정서 | 1통 | 2,000원 | |
| | 사. 건강진단결과서 | 1통 | 3,000원 | 진단항목은 「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」 및 「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」에 따른다. |
| | 아. 건강진단서 | 1통 | 3,000원 |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 '사'목에 '타'목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. |
| | 자. 사망진단서 | 1통 | 500원 | |
| | 차. 출생,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| 1통 | 500원 | |
| | 카. 결핵진단서 | 1통 | 300원 | |
| | 타. 그 밖에 사실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 | 1통 | 300원 | |
| | 파. 기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 | 1통 | 300원 | |
| | 하. 1통 초과 발급 | 1통 | 100원 | |
| | 거. X-선 의료영상 사본 발급 | 1매 (CD) | 3,000원 | |
| 너. 외국인 결핵확인서 | 1통 | 1,500원 | | |
| 2. 유료접종 | 가. B형 간염 접종 | | | |
| | 1) 성인 | 1ml | 4,000원 | |
| | 2) 소아 | 0.5ml | 2,000원 | |
| | 나. 장티푸스 | 0.5ml | 5,000원 | |
| | 다. 신증후군출혈열 | 0.5ml | 9,000원 | |
| 3. 검사 | 가. 간염검사 | | | |
| | 1) A형 간염검사 | 1회 | 16,000원 | |

| 구 분 | 종 목 | 단 위 | 금 액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|---|
| | 2) B형 간염검사 | 1회 | 6,000원 | |
| | 3) C형 간염검사 | 1회 | 3,000원 | |
| | 나. 수질검사 | 1회 |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. | 인·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. |
| | 다. 암표지자검사 | | | |
| | 1) AFP | 1회 | 7,000원 | |
| | 2) CEA | 1회 | 7,000원 | |
| | 3) PSA | 1회 | 7,000원 | |
| | 4) CA125 | 1회 | 7,000원 | |
| | 라. 갑상선기능검사 | 1회 | 15,000원 | |
| | 마. 원스톱 건강검진 | 1회 | 9,000원 | 단, 65세 이상인 자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는 수수료의 50%를 감면한다. |
| | 바. 골밀도 검사 | 1회 | 8,000원 | |
| 4. 구강 보건실 진료비 | 불소도포 진료비 | 1회 | 해당연도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에 의한 치과 1회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 | 단, 시술 상. 하악 당 1회로 산정한다. |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<u>자</u>에게 「지역보건법」 제2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사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|
| <p>제2조(수수료 및 진료비) ①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.</p> | <p>제2조(수수료 및 진료비) ①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기준에 따른다.</p> |
| <p>②·③ (생략)</p> |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3조(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) ①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의 별표 중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.</p> | <p>제3조(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) ①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.</p> |
| 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| <p>②----- ----- ----- -----</p> |
| <p>1. ~ 7. (생략)</p> |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8.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,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,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, 고엽제</p> | <p>8. ----- ----- -----</p> |

| | |
|---|--|
| <p>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 증 2세환자, 참전유공자, <u>20년</u> <u>이상</u> 장기복무제대군인, 특수 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</p> <p>9. <u>기타</u>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</p> <p>10. (생략)</p> <p>제5조(납부방법) 수수료 및 진료 비는 <u>선납으로 한다.</u></p> | <p>----- ----- <u>20년</u> <u>이상</u> ----- -----</p> <p>9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 <p>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납부방법) ----- --- <u>그 날 납부하여야 하고 현</u> <u>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</u> <u>있다.</u></p> |
|---|--|